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춘선 의원 외 64명

나. 의안번호 : 제 649 호

다. 발의일자 : 2023. 3. 29.

라. 회부일자 : 2023. 4. 3.

2.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제3의 대안이 아닌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제안이유

-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지역 정체성'이다. 지명 결정 시 '고덕'이라는 고유지명보다 '지역 안배'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고구려대교'를 제3의 대안으로 교량명칭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동구는 백제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으로 '고구려'는 강동구와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계획단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는 해당교량을 ‘고덕대교’로 명명하고 언론·서울시민·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 이미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돈을 유발하는 결정이 될 뿐이다.
- 명칭 심의·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고덕대교’로 명명할 것을 결의한 뜻을 전달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5. 검토의견

-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이하 “건의안”)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구리~안성 구간에 건설 중인 한강 횡단 교량의 새 명칭을 제3의 대안이 아닌 ‘고덕대교’로 명명해 줄 것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가칭)고덕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고속도로 제29호선)’ 구리~안성 구간인 제14공구 중 강동 나들목과 남구리 나들목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총연장 1,725m 왕복 6차로의 한강 횡단 교량으로서,
-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고 (주)현대건설이 2016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광주성남 나들목~남구리 나들목 구간과 함께 2024년 개통 예정임.



- (가칭)고덕대교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교량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소재지인 강동구측과 구리시측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으로,
- 구리시의회는 2020년 1월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가 아닌 구리시와 관련한 명칭으로 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구리시, 강동구의회,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바 있으며, 현재 구리시는 교량의 80%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해있는 만큼 ‘구리대교’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강동구는 2021년 8월 ‘강동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고덕대교 명칭 제정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특별시에 송부한 바 있으며, 강동구의회는 지난 2월 14일 폐회한 제299회 임시회에서 ‘고덕나들목 및 고덕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2023. 2. 24.)에서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98호)’을 원안가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 등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청원(의안번호 제9호) 역시 채택한 바 있으며,
- 당시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2023. 3. 10)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로 이송(3. 13.)되었고 청원도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안전총괄실로 이송(3. 13.)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음.

- 한편,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노선 개통을 앞두고 지난 3월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안)을 ‘고구려대교’로 제안하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강동구, 구리시에 의견조회를 실시(2023. 3. 10.)하였음.
- 이에 서울시와 강동구는 사업단이 제안한 ‘고구려대교’ 명칭에 미 동의하고 ‘고덕대교’를 지자체(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사업단은 6월 ‘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명칭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 사업단은 관할지자체 간 명칭 부여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 및 지자체명인 고덕과 구리의 첫 글자를 사용¹⁾하여 ‘고구려대교’로 명칭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나, ‘고구려대교’는 삼국시대 고구려를 치칭하는 명칭으로,
- 이에 대해 강동구의 입장은, 강동구의 경우 백제 유적지인 풍납토성과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있어 백제·신석기시대와는 관련이 있으나 고구려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반면에 구리시의 경우는 고구려 문화권으로 고구려대장간마을(구리시 아천동)·광개토대왕비(구리시 교문동)·아차산 보루군(구리시 아천동)을 관광코스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대교’로 명명할 경우 자칫 구리시를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는 의견과 함께,

1) 고(덕)구(리)려 대교

- 국토교통부의 ‘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지역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킬만한 지명은 배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구려대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가칭)고덕대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덕대교’로 불러왔으며 일반적으로 남·북 도로의 경우 남측을 시점으로 보고 있어 교량 시점의 행정구역인 고덕동 지명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IC의 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의 ‘고덕대교’ 명칭은 의미있다 하겠음.
- 반면에, 구리시에서 요청하는 ‘구리대교’ 명칭과 관련하여 인근 2km 이내 지역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로 명칭을 제정할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자칫 혼선의 우려가 예상됨.
-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강동IC와 고덕강일지구의 올림픽대로 접속램프의 통합 설치를 결정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 19조²⁾에 따라 사업비 분담 협약을 2018년 11월에 체결하여,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재원부담)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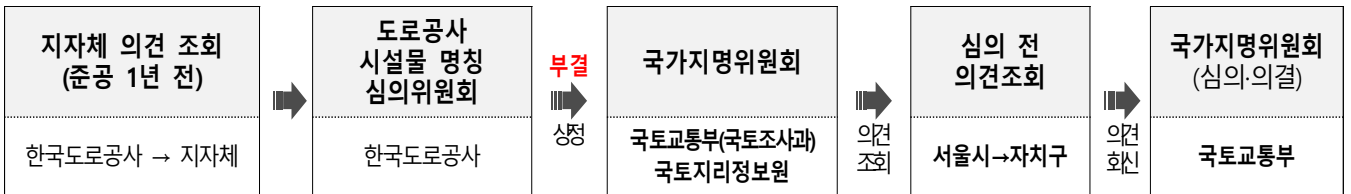
- SH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3,710억원 중 531억 6천만원을 총 3차(1차: 50억원('19.8월), 2차: 415.2억원('20.10월), 3차: 66.4억원('22.11월))에 걸쳐 납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기여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은 통상 설계·건설단계에서 임시 명칭을 사용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준공 1년 전 시설물이 소재한 지자체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리성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명칭을 선정하고자 시설물(출입시설, 교량, 휴게소, 터널 등) 명칭부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 명칭 선정에 적용하고 있음.
- 다만,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시설물 명칭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으며,
- 국가지명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

3. 개발사업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 ④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회를 비롯한 세부내용을 조사 후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시설물 명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표] 지명결정 절차



※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내부지침에 의거 운영

※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